

대학 발전 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1993. 09. 17.

제8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제반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정관,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의 수립·분석·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4)
2. 대학 발전계획 관련 재정에 관한 성과·분석·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4)
3. 교육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기구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건설, 시설계획 및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7. 교육, 연구풍토 조성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8. 한방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3.19)

-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3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이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2(경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04.16)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기획평가처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06.25)

제8조(자료제출의무) ①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의 의뢰)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2(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활용) ① 성과평가 주기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

- ② 평가방법은 기획평가처에서 평가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평가 기초자료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서 세부 추진과제별로, 행정부서는 부서경영계획서, 학과는 학과운영실적 및 발전계획에 의거 평가하며, 학생은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에 의거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 및 학과에 통보하여 업무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06.25)

- ③ 1항 및 2항에 의거 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수리 받고, 차기연도 경영계획서, 학과발전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 만족도조사 평가결과

사항을 포함하여 처리한다. 필요시 재정운영계획에도 반영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6.06.24)

제10조(고문단) ① 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대학장기발전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총장의 의사결정에 외부인사의 자문을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고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고문단의 업무총괄 및 주관은 비서실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04.16.)

② 고문단은 총장이 추대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고문단은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학의 주요사업계획의 조정
2.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 고문단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3.9)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본 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내에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본 위원회 상정 및 교무위원회 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무위원회에 상정한 안전에 대하여는 다음 위원회 개최시 심의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 번호 변경 2015.3.9)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번호 변경 2015.3.9)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불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조 번호 변경 2015.3.9)

부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간위원회운영규정, 교육개혁추진위원회규정, 한방병원발전위원회규정 및 정원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82, 2015.03.09)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8, 2016.06.24)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12, 2018.04.16)

이 규정은 2018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